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재난주관방송사인 KBS의 재난전문채널 운영 의무화 >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95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재난주관방송사인 KBS의 재난전문채널 운영 의무화	2
[참고] KBS LIFE 채널 편성표 ('26.2.25.자)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호선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1. 21.

다. 회부연월일 : 2026. 1.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는 재난방송등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약자 등 재난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재난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가 상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어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만으로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가 재난방송등을 위한 재난전문채널을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난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제공을 통하여 재난상황 등에 적시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재난주관방송사인 KBS의 재난전문채널 운영 의무화

가. 주요 내용

-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인 KBS가 재난방송등을 위한 재난채널을 두도록 규정하고,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자 함(안 제4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① ~ ③ (생략)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① ~ ③ (생략)
<u><신설></u>	<u>④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방송등을 위한 재난채널을 두어야 한다.</u>
<u>④ 제2항 및 제3항에서</u>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주관방송사의 역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u> ----- ----- ----- -----.

나. 검토 의견

-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40조제1항¹⁾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함)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법 제40조의2제1항²⁾은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함)를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이하 “재난주관방송사”라 함)로 지정하고 있음.
- 재난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재난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등을 송출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4.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한다.

재난방송등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 마련,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 구축, 연 1회 이상의 재난방송등의 모의훈련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매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³⁾

○ 그러나 현행법은 ‘재난전문채널’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개정안은 재난주관방송사인 KBS로 하여금 재난전문채널을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 재난전문채널이 운영될 경우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가 상시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재난 대응에 적시성이 제고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용이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②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재난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재난방송등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 마련
2. 노약자, 심신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의 구축
3. 정기적인 재난방송등의 모의훈련 실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의 역할)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이하 “주관방송사”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재난방송등의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방송사는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방송사는 재난방송등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방송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른 방송사업자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재난방송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첫째, ‘재난채널’의 요건과 구체적인 역할 등 재난채널의 운영 방향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 개정안은 재난주관방송사인 KBS에 ‘재난방송등을 위한 재난 채널’을 두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재난방송등의 편성 비율 등 재난채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나 재난상황 시 재난 채널이 행하여야 할 역할 등에 관하여 일체의 규정 없이 모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개정안은 KBS가 재난전문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수범자인 KBS로 하여금 재난전문채널 관련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재난채널의 요건, 역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직접 규정하거나, 최소한 하위 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둘째, 현재 KBS가 2024년부터 운영 중인 재난 안전 분야 전문 채널의 현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2월 KBS는 자체적으로 재난·안전 전문채널의 신설과 운용을 발표한 후, 같은 해 4월부터 ‘KBS LIFE’ 방송채널을 재난과 안전 분야 전문채널로 전환하였음.
 - 종전 시사교양과 다큐멘터리 편성 위주였던 KBS LIFE채널은 2026년 현재 재난방송 관련 90분 분량의 방송프로그램인 「재난안전 119」를 주 5회 생방송으로 편성하고 있는 한편, 예능

방송프로그램 편성도 병행하고 있음([참고] KBS LIFE 편성표).

- 이와 관련하여 KBS는 현재 매주 일요일 방송 중인 ‘재난방송센터’ 프로그램을 올해 봄부터 주5일로 확대 편성하기로 하는 등 대국민 재난 정보 도달률 극대화 전략을 모색·추진 중이며, 현재도 재난전문채널에 준하는 정도로 재난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임.
- 셋째, 재난전문채널 운영 인력·예산 확보 측면에서의 방미통위와 KBS의 신중검토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채널과 달리 수시로 발생하는 재난 관련 정보, 기상정보, 감염병 정보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24시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재난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 다만, 재난전문채널을 의무화하는 것은 하나의 방송국을 개국하는 것과 동일한 층위의 문제로서 KBS가 이를 운영하기 위한 방송허가 등 제도 측면의 미비점과 더불어 인력·장비·예산 확보 부담, 콘텐츠의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 KBS 또한 재난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려는 목적에는 공감하나, 재난전문채널 설치·운영에 최소 수백억원 이상의 예산과 100여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재난전

문채널 편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물가상승률 반영 등 수신료 현실화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종합해보면, 재난전문채널로 인한 재난 정보의 상시 제공으로 재난 대응의 적시성이 제고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개정안의 긍정적 취지에 더불어 재난채널의 요건과 역할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 없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점, 현재 KBS에서 운영 중인 재난·안전 전문채널의 현황,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재원 문제 등과 관련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방미통위와 KBS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26

참고

KBS LIFE 채널 편성표 (26.2.25.재)

2026.2.20.(금) 확인 기준

시 각	프로그램명	비 고
05:00	동네한바퀴	
06:00	인간극장	
07:40	인간극장	
09:00	한국인의밥상	
10:00	시사기획창	
11:00	재난안전119	재난 관련
12:30	영상앨범산 (부편)	
13:00	더 보다	
13:50	KBS 재난방송센터	재난 관련
14:00	재난탈출 생존왕	재난 관련
15:00	내고향스페셜 남도지오그래피	
16:00	한국인의밥상	
17:00	KBS네트워크특선 해드림컴퍼니	
18:00	위기탈출넘버원	재난 관련
19:00	리얼카메라 진실의 눈	
20:00	개그콘서트	
21:00	생로병사의 비밀	
22:00	시사기획창	
23:00	내고향스페셜 남도지오그래피	
00:00	스모킹 건	
01:00	우리들의 지식살롱	
01:30	AI토피아	
02:00	위기탈출 넘버원	재난 관련
03:00	UHD환경스페셜	
04:00	KBS네트워크특선 해드림컴퍼니	